

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/자동차담보대출 / 신용대출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

현대카드 주식회사 귀중

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회원님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아래의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회원명(채무자)	
생년월일	
주소	
연락처	
철회 신청하는 대출계약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담보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대출
대출 이용 금액	
대출 실행일자	
대출 계약 철회 기간	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(실행일은 포함되지 않음)

- ※ 대출계약 철회를 원하실 경우, 고객센터(1577-6000)로 연락주시거나, 해당 양식 작성 후 우편 접수(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)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※ 대출계약 철회는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해 철회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, 철회 기간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,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※ 대출계약 철회 기간 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본인은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 성명(채무자)

서명/인